

財務經濟委員會 白南善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南善議員 안녕하십니까? 財務經濟委員會 白南善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地方公務員人事制度改善實施促求 建議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特別市를 비롯한 廣域地方自治團體 執行機關과 議會에 복수직급제를 도입·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市 집행기관의 주요부서와 서울特別市議會 및 自治區議會 專門委員 직급을 상향조정하며, 廣域地方議會 議員의 입법, 조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5급의 입법정책연구원 직제 신설 등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2차에 걸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中央政府에서는 복수직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地方自治團體에서는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市에서도 복수직급제 도입을 中央政府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中央政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地方自治團體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委員會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地方公務員人事制度改善實施促求建議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선실시촉구건의안

1991년 7월 지방의회 발족과 1995년 7월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출범 실시로서 서울특별시와 전국광역시·도 및 기초의회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전원은 지혜와 양심의 혼신의

정력을 기울여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주민복지증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참신한 지방자치실시를 위하여는 첫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과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 셋째, 지방의회 감시 견제 기능 향상 넷째,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추진 등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행정 현장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왔다.

우리 나라의 헌법은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하였고, 헌법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 조직·권한, 의원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실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방자치법 제1조는 지방자치의 목적,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을,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제26조는 지방의회를, 제82조는 의회사무처를, 제93·94·95조는 국가사무위임 등을 규정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지방자치의 강력한 실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성공의 관건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추진과 지방자치행정 발전에 있는바,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도 중요하나 전 국민이 주시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 ① 도시방재와 시민안전
- ② 편리하고 빠른 교통
- ③ 깨끗하고 충분한 맑은 물 공급
- ④ 맑고 깨끗한 환경(환경보전, 하수처리, 도시연료 현대화)
- ⑤ 쓰레기 처리 개선
- ⑥ 산업의 경쟁력 제고(상공행정,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노동행정,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 ⑦ 주거생활안정(도시재개발, 도시건설)
- ⑧ 주민생활향상(저소득층 주민생활기반, 의료보장제도, 사회복지, 보건위생, 의약관리)
- ⑨ 문화도시기반 조성
- ⑩ 관광사업 진흥 및 국제교류증진

- ⑪ 균형있는 도시발전(도시계획, 도시재개발, 공원사업, 도시건설사업)
- ⑫ 교육과 주민의식개혁
- ⑬ 주민을 위한 행정(민원행정, 자치구행정)
- ⑭ 일반행정(기획관리, 행정쇄신, 공보, 재무) 등의 성공과 실패가 지방자치의 존립을 좌우함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확인하였는바, 지방자치 실시 1주년을 맞이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문일권)는 강력한 지방자치행정발전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직자의 헌신적인 봉사를 중앙정부와 지방공직자에 촉구하는 바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8·9·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관한 존재업무(Existenzaufgaben)의 강력한 추진과 시책개발로서 발전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제93·94·95조)상의 국가위임사무 수행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1991. 7.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 자생력의 증추적 역할을 감당할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향되고 있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연 도	재정자립도 %	연 도	재정자립도 %
'91	66.4	'93	68.0
'92	69.6	'94	63.9
		'95	36.5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추진이 긴급하며, 또한 지방자치행정사무에 있어서

- ① 지방자치단체 행정관리
- ② 주민복지증진
-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
- ④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 ⑤ 교육, 체육, 문화예술의 진흥
- ⑥ 지역민방위, 소방 등에 관한 사무의 추진은 증차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기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추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행정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정책입안과 개발 추진
채택된 지방자치행정시책 실시 구현]

에 충성을 다 바쳐서 봉직하면서 지방자치 행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4급직지방공무원(지방별정직 4급상당포함)에 대하여

- ① 사기를 진작시키고
 - ② 지방행정 정책 개발 의욕 향상
 - ③ 지방행정 책임 실명제 실시
 - ④ 지방자치행정 발전 촉구
 - ⑤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방안 연구 추진
- 의 실시가 긴급함을 주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발전과 지방의회 발전 그리고 의원 위상 제고를 위하여 1995. 4. 1부터 중앙정부에서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기능을 보장하고 그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상응하는 직급의 부여로 실적주의에 입각한 의사 관리 기준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과장, 그리고 과장급 담당관의 직위를 4급으로 보직 실시

실시하여 공직사회에 새로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킨 3급공무원 복수직 인사제도를 서울특별시와 전국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절대절명 소명의식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발전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성실히 봉직하게 하고,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공직자 개인 발전을 위하여 지방3급공무원(지방3급상당 별정직 포함) 복수직제도 실시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실시를 중앙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재정경제원장관, 내무부장관, 총무처장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와 서울특별시, 전국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건의하는 바이며, 이 제도를 긴급히 실시할 것을 건의 촉구한다.

- 건 의 사 항 -

- I.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전국광역시 시장, 도지사는 지방3급공무원 복수직 인사 제도로 실시할 것.
- II. 우리 나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증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주요부서, 3사업본부, 시의회사무처 25개 자치구

<p>포함)에 3급복수직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충실히 보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4급상당 별정직에서 지방3급상당 별정직으로, 25개 자치구 구의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5급에서 지방4급직으로 상향 실시할 것이며, 전국광역시·도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을 지방4급에서 지방3급으로 상향 실시할 것.</p> <p>Ⅲ. 전국광역시·도(주요부서, 시·도의회 포함)에 3급 복수직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전국광역시·도의회 전문위원 직급을 전국광역시·도 국장급과의 형평을 위하여 지방3급공무원 직급으로 상향 조정할 것</p> <p>Ⅳ. 서울특별시와 전국광역시·도의회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있어 입법, 조사, 행정, 감사 의정연구 지원을 위하여 전국광역시·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에 지방5급상당 별정직 또는 지방5급공무원으로 보직하는 입법정책연구원 직제를 신설 실행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문 일 권</p>	<p>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p> <p>이번 회기에 심사한 경교장地方文化財指定促求建議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白凡 金九 선생은 항일독립운동과 大韓民國 민족통일운동에 한평생을 바쳐오신 분으로 우리 근대사에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여 온 분이냐 불행하게도 암살범 安斗熙의 흉탄에 암살당한 역사의 현장인 경교장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보전키 위해 서울地方文化財로 지정토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文化教育委員會에서는 동 건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경교장 현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한바, 현재 본 건물은 역사의 현장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형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소유주마다 자기 취향에 맞도록 해당 건축물의 원형을 훼손, 구조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현재는 삼성병원의 진료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건물 1층은 병원의 현관 및 사무실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나 96년 4월 소유주인 강북삼성병원측의 증축허가를 위한 사전심의시 경교장의 역사현장을 보존한다는 뜻에서 현 위치에 존치하는 방안으로 재설계 권고조치한 사실이 있는바, 우리委員會에서는 경교장에 대해 白凡 金九 선생의 독립정신 및 민족정신을 현양할 수 있도록 地方文化財로 지정하여 보존토록 촉구하는 建議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p> <p>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말씀하고자 합니다.</p> <p>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本議員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p> <p>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p>○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경교장地方文化財指定促求建議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 style="text-align: center;">경교장지방문화재지정촉구건의안</p>
<p>20. 경교장地方文化財指定促求建議案(許光泰·鄭水華議員 外 13人 發議)</p> <p style="text-align: right;">(16時 25分)</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교장地方文化財指定促求建議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p> <p>文化教育委員會 許光泰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許光泰議員 文化教育委員會 소속 許光泰議員입니다.</p> <p>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신 議員님들께 경교장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p> <p>존경하는 文一權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제가 경교장地方文化財指定促求建議案 심사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p> <p>동 건의안은 1996년 11월 28일 財務經濟委員會 鄭水華議員과 文化教育委員會 本議員 등 15인으로부터 우리 議會에 제출되었으며, 議長으로부터 1996년 11월 30일 우리 委員</p>	